



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금융중심지지원센터에 대한 통제 강화 〉

■ 김승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023호)

2026. 3.

정 무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 명 호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금융중심지지원센터에 대한 통제 강화	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김승원 등 10인
2. 제 안 일: 2025. 12. 9.
3. 회 부 일: 2025. 12. 1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 진출 지원,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진입 지원 등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금융중심지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두도록 하고 있고, 금융위원회는 센터의 설치, 운영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 그러나 법률에는 센터에 대한 예산 지원의 근거조항만 있고, 사업계획 및 예산에 대한 사전 승인이나 실적의 사후보고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예산사용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센터는 매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고, 중요한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다시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사업 운영의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13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Ⅲ. 검토의견: 금융중심지지원센터에 대한 통제 강화

- 개정안은 금융중심지지원센터의 장이 사업계획서, 예산서 및 결산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사업계획과 예산 및 결산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제13조(금융중심지지원센터) ① ~ ④ (생략) <u><신설></u>	제13조(금융중심지지원센터) ① ~ ④ (현행과 같음) <u>⑤ 금융중심지지원센터의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 중요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u>
<u><신설></u>	<u>⑥ 금융중심지지원센터의 장은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u>
<u><신설></u>	<u>⑦ 금융중심지지원센터의 장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보고서에 그 연도의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u>

- 금융중심지지원센터는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중심지법’)에 따라¹⁾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 진출이나 외국 금융

1) 「금융중심지법」

제13조(금융중심지지원센터)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 관련 업무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금융중심지지원센터를 둔다.

1.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 진출 지원
 2.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진입 지원
 3. 국내 금융기관 및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에서의 금융업 영위와 관련된 경영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의 처리
- ② 금융중심지지원센터의 장은 제1항제3호의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련

기관의 국내 진입을 지원하고, 국내외 금융기관의 경영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조직임.

○ 「금융중심지법」 및 시행령²⁾은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 정부출연 연구기관,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법인·단체 중 금융중심지지원센터를 설치할 기관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해당 기관으로 지정되어 금융감독원 내에 금융중심지지원센터가 설치되었고(2008년 9월), , 금융위원회로부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아 금융중심지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참고로, 2026년 예산에는 ‘금융 관련 국제협력 및 금융중심지추진 사업’의 일환으로, 금융중심지지원센터 보조 예산(민간경상보조) 2억 8,300만원이 편성되어 있음.

□ 개정안은 「금융중심지법」에 금융중심지지원센터에 대한 예산 지원의

법인이나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가 협조 요청에 응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금융중심지지원센터의 장은 제1항제3호의 경영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의 처리현황과 실적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영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의 처리와 관련하여 법령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때에는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함께 보고할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는 예산의 범위에서 금융중심지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2) 「금융중심지법 시행령」

제15조(금융중심지지원센터) ① 금융위원회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금융중심지지원센터를 설치할 기관이나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1.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 그 밖에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②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이나 법인·단체는 14일 이내에 협조 요청에 응하거나, 협조 요청에 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융중심지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근거 조항만 있고, 사업계획 및 예산에 대한 사전 승인이나 실적의 사후 보고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예산 사용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이 부족하다고 보아 이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으로,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금융중심지지원센터의 예산 집행이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취지임.

- 유사입법례로,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³⁾에서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에 대해 개정안과 유사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다만, 「금융중심지법」 하위 법령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중심지지원센터는 업무계획 및 실적, 운영 경비 사용 계획 및 실적을 이미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금융중심지법 시행령」은 금융중심지지원센터의 운용에 필요한

3)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33조(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기기업의 시장 진출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을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른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에 대한 인증 및 재평가에 필요한 지원업무
 2. 의료기기시장 진출절차에 관한 상담 및 자문
 3. 의료기기시장 진출과 관련된 정부·공공기관의 지원사업 연계
 4. 의료기기시장 진출 관련 애로사항 발굴 및 해소 지원
 5. 그 밖에 의료기기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②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로 지정받은 기관의 장은 매년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사업실적을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③ 국가는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료기기산업에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 ⑤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항을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융위원회가 정하도록 하고 있고(시행령 제15조제3항), 「금융중심지지원센터 운영규정」(금융위원회 고시)은 지원센터의 장이 매년 1월 31일까지 업무계획을 수립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해당 업무계획에 따른 업무실적을 반기마다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⁴⁾. 또한, 지원센터의 운영 경비를 보조받기 위해서는 5월 31일까지 보조사업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외 보조금⁵⁾ 관리에 대해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 이에 대하여 금융위원회는 금융중심지지원센터의 예산 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개정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임.

4) 「금융중심지지원센터 운영규정」(금융위원회고시) 제3조(업무계획의 수립 등) ① 지원센터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업무에 대한 업무성과 및 목표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도록 해당연도 업무계획을 수립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업무계획을 변경한 때에도 변경한 업무계획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업무계획에는 연간 보조금 교부 신청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의 업무계획과 관련하여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성과목표의 조정 등 업무계획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센터의 장은 그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업무실적의 보고) ① 지원센터의 장은 제3조제1항의 업무계획에 따른 업무실적을 반기마다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원센터의 장에게 관계서류, 장부, 그 밖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집행) ① 지원센터의 장은 지원센터의 운영 경비를 보조받으려면 5월 31일까지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사업의 내용, 예산 사정 등에 따라 보조금을 일시에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의 장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구분 계리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관계 법령에 정하여진 용도 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사정의 변경에 따른 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등 보조금 관리와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규정에 따른다.

5) 금융중심지지원센터 보조 예산은 민간경상보조 비목으로 편성되어 있음.

문 의 처

02)6788-5104
